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위 치	기 능
구미체육관	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	농구, 배구, 각종 실내경기 및 행사
시민운동장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육상, 축구, 각종행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구미체육관 및 시민운동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

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군인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는 신고로 같음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개인이 사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같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 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공중에 위대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 2. 술에 만취된 자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3. 상행위나 업체홍보 등을 위한 행위로서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 저해 우려가 인정될 때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종류 및 납부방법)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상행위사용, 부속시설 사용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1) 내지 (별표4) 와 같이 정한다.

- ② 전용사용 및 이용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상행위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에 의하되 사용료 비율은 (별표1) 과 같다. 이 경우에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을 위한 각종 경기 및 행사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다만,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 ② 이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 : 1,000원
2. 어린이 : 500원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 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 고
구 미 체육관	주 경기장	조 기	60,000원	200,000원	◦ 규정한 사용료는 평일 기준임. ◦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10퍼센트, 야간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한다. ◦ 보조경기장 사용료는 보조경기장만 사용시의 금액임.
		주 간	60,000원	200,000원	
		야 간	80,000원	300,000원	
	보 조 경기장 (1면기준)	조 기	30,000원	50,000원	
		주 간 야 간	40,000원 50,000원	80,000원 100,000원	
	유 료 입 장		입장수입의20%	입장수입의20%	
시 민 운동장	트 랙	조 기	40,000원	130,000원	
		주 간	40,000원	130,000원	
		야 간	50,000원	150,000원	
	필드	조 기	60,000원	160,000원	
		주 간 야 간	60,000원 80,000원	160,000원 200,000원	
	유 료 입 장		입장수입의20%	입장수입의20%	

※ 체육경기란 2개이상의 서로 다른 단체가 팀으로 편성되어 경합하는 순수한 체육경기에 한하며, 시장기 각종대회, 상공회의소장기 쟁탈전 축구대회 등을 말한다.
(단, 프로경기는 체육경기외를 적용한다)

【별표 2】

이용사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시민운동장	트랙	1회 2시간	500원	300원	○ 평일 주간 기준 사용료임.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을 말함.
	필드	〃	500원	300원	
구 미 체 육 관	주경기장	1회 2시간	2,000원	1,500원	
	보조경기장 (1면기준)	〃	1,000원	800원	

※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의 사용료는 기본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 토·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평일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별표 3】

상행위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개 당)		비 고
선전 또는 부착 광고물		대형 (20m-30m)	100,000원		일시계양(동일행사 5일 이내) 폭은1.5m 이내로 한다. 1일 초과사용은 해당금 액의 20%를 가산한다.
		중형 (10m-20m)	50,000원		
		소형 (10m미만)	30,000원		
부 양 광 고 물 (에드벌론 등)		1일, 1개	7,000원		
프로그램 및 선전 책자등의판매행위		판매부수 및 단가	판매부수×단가×20%		
영 화 촬 영		주 간 야 간	40,000원		
			60,000원		
총 계 방송료	구 분		텔레비전	라디오	
	체육경기	국 내	40,000원	20,000원	
		국 제	60,000원	40,000원	
	체육경기 이외	국 내	100,000원	50,000원	
		국 제	120,000원	60,000원	
	녹화 또는 녹음		총계방송료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		총계방송료와 동일		

※ 총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별표 4】

부 속 시 설 사 용 료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 기 료		기본료 + 실사용료	
전 광 판	시민운동장 구미체육관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기본료 + 실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20,000원)	
냉 난 방	냉 방 난 방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 연료대(가스료) 기본시설사용료(25,000원) + 연료대(가스료)	
음향시설		기본시설사용료(20,000원) + (마이크수 × 5,000원)	
수 도 료		실사용료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 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허 가 서

허 가 번 호 : 제 호

신청자 주소 :

성 명 :

사 용 시 설 :

사 용 목 적 :

사 용 일 시 :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검 인 신 청 서													
행사(대회)명													
일 시													
주최 및 주관	주 소												
	성명(단체명)												
검 인 내 용													
구 분	관 랑 료	매 수	비 고	초 대 권	구 분	매 수							
지 정 석					지 정 석								
어 른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단 체 (회원)													
계					계								
위와 같이 관람권·초대권에 대한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미시장 귀하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담당자</td> <td style="width: 15%;">담 당</td> <td style="width: 15%;">소 장</td> <td rowspan="2"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결 재</td> </tr> <tr> <td style="height: 30px;"></td> <td></td> <td></td> </tr> </table> 위 신청내용과 같이 검인· 발행코자 합니다.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 재			
담당자	담 당	소 장	결 재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u><신 설></u>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60%;"> <tr> <th>명 칭</th><th>위 치</th><th>기 능</th></tr> <tr> <td>박정희 체육관</td><td>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td><td>농구, 배구, 각종 실내 경기 및 행사</td></tr> <tr> <td>시민운동장</td><td>구미시 광평동 277번지</td><td>육상, 축구 각종행사</td></tr> </table>	명 칭	위 치	기 능	박정희 체육관	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	농구, 배구, 각종 실내 경기 및 행사	시민운동장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육상, 축구 각종행사	제1조(개정안과 같음) 제2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60%;"> <tr> <th>명 칭</th><th>위 치</th><th>기 능</th></tr> <tr> <td>구 미 체육관</td><td>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td><td>농구, 배구, 각종실내경기 및 행사</td></tr> <tr> <td>시민운동장</td><td>구미시 광평동 277번지</td><td>육상, 축구 각종행사</td></tr> </table>	명 칭	위 치	기 능	구 미 체육관	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	농구, 배구, 각종실내경기 및 행사	시민운동장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육상, 축구 각종행사
명 칭	위 치	기 능																		
박정희 체육관	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	농구, 배구, 각종 실내 경기 및 행사																		
시민운동장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육상, 축구 각종행사																		
명 칭	위 치	기 능																		
구 미 체육관	구미시 광평동 산50번지	농구, 배구, 각종실내경기 및 행사																		
시민운동장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육상, 축구 각종행사																		
제2조(정의) (생략) 1.----- 구미 체육관 -----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설치 운영하는 박정희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	제3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설치 운영하는 구미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																		
제3조(사용허가) ①~④(생략)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등 행사 7. 기타	<u>< 삭제 ></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사한 각종 행사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1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 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 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 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의한 공연행사 6. < 삭 제> 7. < 삭 제 >

【 별표 1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구분 : <u>박정희 체육관</u>	구분 : <u>구미 체육관</u>

【 별표 2 】

이용 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구분 : <u>박정희 체육관</u>	구분 : <u>구미 체육관</u>

【 별표 4 】

부속시설 사용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구분 전광판 : <u>박정희 체육관</u>	구분 전광판 : <u>구미 체육관</u>